

1. 창업규정 신구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'창업'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학생이 창업하여 벤처기업CEO로 취임 후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2. (삭제)</p> <p>3. '대학 투입분'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, 인력, 장비, 지적재산권 등을 말한다.</p> <p>4. '교직원'이라 함은 본 대학에 소속한 모든 <u>교직원</u>,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말한다.</p> <p>5. '창업 휴학'이라 함은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을 말한다.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'교직원'이라 함은 본 대학에 소속한 모든 <u>전임교직원</u>,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말한다.</p> <p>2. '학생'이라 함은 <u>학부생,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</u>을 말한다.</p> <p>3. '<u>교직원 창업</u>'이라 함은 <u>교직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(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)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, 여기서 '설립'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(사외이사, 비상근 등기이사, 감사 제외)에 취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%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</u></p> <p>4. '<u>학생 창업</u>'이라 함은 <u>학생이 재학 및 휴학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5. '창업 휴학'이라 함은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을 말한다.</p> <p>6. '대학 투입분'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, 인력, 장비, 지적재산권 등을 말한다.</p> <p>7. '<u>중소기업</u>'이라 함은 「<u>중소기업기본법</u>」 제2조에 따른 <u>중소기업</u>을 말한다.</p> <p>8. '<u>벤처기업</u>'이라 함은 「<u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2조에 따른 <u>벤처기업</u>을 말한다.</p>	<p>-현행 제4호 이전, 문구 명확화</p> <p>-신설: 학생범위명시</p> <p>-대학 보유기술의 사적 유용 차단 및 창업활동 양성화를 위한 미래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업을 교직원 창업 및 학생 창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명시함.</p> <p>-미래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어정의 추가</p>
<p>제4조(창업대상 및 기간)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직원</p> <p>2.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</p> <p>3. 우리대학 및 대학원에 학적을 둔 학생</p>	<p>제4조(창업대상 및 기간)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직원</p> <p>2.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</p> <p>3. <u>다만,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창업 시 대학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창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 <p>4. 우리대학 및 대학원에 학적을 둔 학생</p>	<p>창업대항 제한 완화</p> <p>: 他과기대 대비 과도한 창업대상 제한 등 현재의 창업트렌드와 불일치</p>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② 창업기간 및 창업휴학 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전임교직원: 휴직3년, 겸직1년으로 하며, 총 창업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<u>해당부서 처장 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의</u> 동의를 얻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, 1회 연장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2.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: 겸직 1년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겸직을 희망할 시에는 <u>총장의 승인으로</u> 추가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은 생략한다.</p>	<p>② 창업기간 및 창업휴학 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전임교직원: 휴직3년, 겸직1년으로 하며, 총 창업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<u>소속부서 처장 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</u> 동의를 얻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, 1회 연장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2.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: 겸직 1년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겸직을 희망할 시에는 <u>소속부서 처장 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-문구 명확화</p> <p>- 창업승인 절차 통일</p> <p>: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 창업 현황 관리의 체계화</p>